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나38873(본소), 2021나38880(반소) 판결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태석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17.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18가단71732(본소), 2020

가단16172(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21,330,6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59,830,529원 및 그 중 19,778,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25.부터, 40,052,529원에 대하여는 2018. 10. 15.부터 각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본소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26,6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들

1) 본소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반소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19,7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5.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는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쪽 7행의 “2017”을 “2018”로 고친다.

○ 제13쪽 하단 3행 내지 제14쪽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철거 추가공사 13일, 차수공사 17일, 지수판설치 5일 등 추가공사로 인한 54일, 폭염경보 10일, 피고들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12일, 합계 76일간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는데, 원고는 2018. 7. 24.부터 이메일로 수회에 걸쳐 감리자에게 추가공사로 인해 공사기간을 54일 연장하는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8. 8. 29. 공문으로도 위 내용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들은 구두로만 승인하면서 서면을 작성해주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54일간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폭염경보 및 피고들의 공사대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22일도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제14쪽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갑 제22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공사대금 지급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4쪽 하단 1행의 “위 30일은 원고의 지체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하수급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바람에 8월까지 공사가 늦춰졌으므로 폭염으로 인한 10일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 등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하수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판사 이정형, 판사 구광현